

# 예 산 총 칙

2019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22,153,577	12,664,607
일반회계	408,351,643	12,250,549
특별회계	13,801,934	414,058
기타특별회계	13,801,934	414,058
의료급여특별회계	559,038	16,771
지하수관리특별회계	1,601,793	48,054
주차장특별회계	8,173,186	245,196
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	1,305,315	39,159
재정비촉진특별회계	2,162,602	64,878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733,686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2,500,000천원으로 한다